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 www.motie.go.kr

문의: 통상법무과 홍영기 과장(2110-5387), 정기창 사무관(2110-5388)

# 우리나라産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·상계관세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

□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,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(삼성 9.29%, LG 13.02%) 및 상계관세(삼성 1.85%)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, 동 조치를 8.29(목)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.

○ 정부는 지난 6.20(목)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, 관련 법리 분석,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제소를 결정

○ WTO 분쟁해결양해(DSU)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8.29(목)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

□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·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임.

※ WTO 분쟁해결양해 제4.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(미국)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,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제소국(우리나라)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

□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.

○ 반덤핑관세의 경우, 미측이 사용한 표적덤핑(targeted dumping) 방식과 제로잉(zeroing)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측은 동 조치의 시정 의무 발생

※ WTO 반덤핑협정은 특정기간이나 장소에 일시적, 제한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덤핑조사방식으로는 덤핑판정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표적덤핑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

※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국 판매가격(정상가격)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(정상가격 - 수출가격)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"0"으로 간주하는 반덤핑관세 계산 방법으로, 덤핑마진율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

○ 상계관세의 경우, WTO에서 우리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측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의 시정 의무 발생

※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금액/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루어진 바, 미측은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

□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미측의 반덤핑·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.

○ 또한,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,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

첨부: 1. 제소 경과 및 대미 수출량 비교
2. WTO 분쟁해결절차도 /끝/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홍영기 과장(☎ 02-2110-53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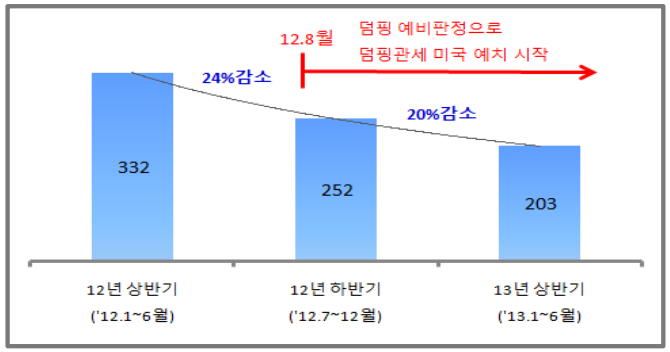
## 참고1 제소 경과 및 대미 수출량 비교

□ 제소 경과

- o 월풀사의 반덤핑·상계관세 상무부 제소('11.12.30)
- o 상계관세 예비판정('12.5.30)
- o 반덤핑 예비판정('12.7.30)
- o 상계관세 현지 실사('12.9.17~18)
- o 상무부 최종판정('12.12.19)
- o 미 무역위(ITC) 피해 최종판정('13.1.23)
- o 업계 제소 요청('13.6.20)
- o WTO 제소('13.8.29)

□ 조사대상 세탁기의 대미 수출량 비교(단위: 백만불, 무역협회 자료)

| HS코드 및 품목명 | | 12년 상반기 ('12.1~6월) | 12년 하반기 ('12.7~12월) | 13년 상반기 ('13.1~6월) |
|---|---|---|---|---|
| 845011 | 10kg 이하 세탁기 | 9 | 4 | 5 |
| 845020 | 10kg 초과 세탁기 | 293 | 219 | 163 |
| 845090 | 부분품 | 30 | 29 | 34 |
| **합 계** | | **332** | **252** | **203** |






## 참고2 WTO 분쟁해결절차도

